

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(제27조관련)

구 분		등 록 요 건
인보험대리점		1.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인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. 인보험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4.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
손해보험 대 리 점	초 급	1.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 초급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.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인정하는 자 4.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이상 고용하고있는 법인
	일 반	1.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 일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.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인정하는 자 4.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
	총 괄	1.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 총괄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.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4.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

※ 비 고 : 보험대리점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수가 100명이상인 법인이 법인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제4호를 충족하는 외에 소속임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모집 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.